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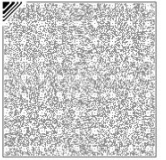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및 의료폐기물 적정처리 협조 요청(배출자·처리자)

1. 우리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"혈액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,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"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, 배출·처리할 수 있도록 「폐기물관리법」 하위법령을 개정·시행('19.10.29.) 중에 있습니다.
 2. 이에, **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**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(사업장일반폐기물) 배출 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의료폐기물(소량 의료폐기물)에 대하여 **처리업체(수집운반, 소각처리)에서는 일방적인 수거거부***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**않도록 협조**하여 주시고, 소량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규계약을 적극 검토하여 배출기관에서 **의료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협조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위·수탁계약기간 만료 전, 처리업체(수집·운반, 소각처리)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거를 거부 할 경우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8](처리업자의 준수사항) 제1호사목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, 과태료(1000만원 이하) 및 행정처분(영업정지 1개월) 대상에 해당함
 3. 또한, **의료폐기물 배출기관(종합병원, 요양병원 등)에서는**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및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'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*' 이행, 처리업체와의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후 **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환경부 홈페이지 → 법령/정책 → 자원순환에서 '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' 검색
- ※ 상기사항에 대하여 관련 협회 및 조합에서는 배출자·처리업자에 즉시 공유, 환경청에서는 의료폐기물 수집·운반업체에 내용 전달 부탁드립니다. 끝.



환 경 부 장 관



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낙동강유역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금강유역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영
산강유역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원주지방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대구지방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대한
의사협회 귀하, 대한병원협회 귀하, 대한요양병원협회 귀하,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귀하, 의료폐기물 소각
업체 귀하

주무관	김준식	행정사무관	김유경	기술서기관	전결 2020. 1. 10. 권병철
-----	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폐자원관리과-213 (2020. 1. 10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, 환경부 폐자원관 / <http://me.go.kr>
리과

전화번호 044-201-7361 팩스번호 044-201-7376 / mentor257@me.go.kr / 대국민 공개